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

제출연월일: 2019. 4. 4. 제 출 자: 복지경제국장

1. 개정이유

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등 복지증진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내용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2.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 알림장치 등 설치내용 반영(안 제5조제1항제6호)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 나. 조문 제목 등 개정(안 제10조)
 - 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 제목과 맞도록 정비
- 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정비(안 별지 제1호 서식)
 -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란 신설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비고 제1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12 (제214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자체개선안 동의(여성가족과-7730호, 2019. 2. 25.)

라. 입법예고: '19. 2. 18. ~ 3. 11.(21일간)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95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화장실내"를 "화장실 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의 제목 중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리카드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중 "관리대장을"을 "관리카드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설치년도"를 "설치연도"로, 시설관리 내역란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하고, 시설관리 내역란 다음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란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점검 내역 전월일 (육안, 남자기 중) 조시내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소속			
설 치 및	설치주체					치 연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직 급			
설치및 관리주체	관리주체									공무원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밴호	:)		울	월평균 이용인원					
	모	부 지 (㎡)	화장실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7			면적(m²)	남	여	장애	<u> </u>	성인용	용에유 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냉 시	방 환풍 설 기		화장지	비	누 (수 건 에어	탈취제		청소도	구함	기타
		시 설	시설	시	설	기	(자 동 판매기)	-1	Ė	에어 카올)	<u>)</u> (방향제)	내부	외부	. /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형		금 (천	액 원)	연월일	관 사	발	금 ⁰ (천원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연월일				점검병 안, 통 등)	描 닭지기			조치내9		-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혅 했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 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 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 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 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와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화<u>장실 내</u>-----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 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 다.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 ----- 관리카드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 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 를-----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 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카드	공중화장실카드							
전 경 사 진	전 경 사 진							
화장실 소 재 지 명칭	호장실 소 재 지 명칭							
지역구분 설 관리책	지역구분 설 관리책 소속							
설치 및 실치 및 관리주체 설치 및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프리주체 프리주체 도로 도로 보고 되었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설치 및 실치 및 관리주체							
(전화번 관 리 인 월평균 이용인원 호 :)	관리인 설평균 이용인원 호:)							
고 모 부지 (㎡) 부지 (㎡) 남여 전에 사용료 인용용 용 식	규 모 부지 (m) 화장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실적 변경 등 상식 유료 무료 인 용 용 식							
편의시설 내역 세면 내생환 (기비 (비형제) 물취제 (비형제) 기타 내부 외부	편의시설 내역 서 설 사 사 기 등 만기 이 어타 있을)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u>년월일</u> 관리 <mark>현</mark> 관리 급액 년월일 관리사 급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 <u>연월일</u> 관리 경 원 관리 (천원) 연월일 관리사 급 액 (천원)							

근 거 법 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의2. 제1호에 따른 대·소변기의 수에 제14호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용 대·소변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 4.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6.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 (제214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 8의2.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다.
-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2.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13. 삭제 <2018. 9. 4.>
-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 야 한다.
-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 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 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비고

-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 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제5호 및 제8호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성	별영향평	가 검토의	니견 통	보서					
관리번호	2019A울산중구007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위생과								
	담당자명	이헌	전화번호	052-290-37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2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위생과)	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비상 알림장치 등 설치내용 반영(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조문제목 등 개정(안 제10조), 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정비(안 별지제1호서식),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등에 대한 내용임.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 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비상 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관리 내역란 아래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란을 신설한다. 라는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2월 22일

울산광역시중구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03)

환경위생과장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가.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등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그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시 특별교부세 교부) 등을 기 설치하였으므로(비용추계서 대상 비용 미만) 해당이 없음

3. 작성자

○ 소 속 : 환경위생과

○ 직 책:환경지도계장

○ 이 름:이 헌

○ 연락처 : 290-3721